

특별공급 공통 안내문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특별공급의 경우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무주택자임.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 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치금 잔액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안내문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방법	장소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자	2020.06.03 (수)	인터넷 청약 08: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홈'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0.06.10.(수)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0.06.11.(목) ~ 2020.06.15.(월) [5일간] (10:00~17:00) 장소 : 당사 건본주택 T:1833-33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 (송도동 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0.06.22.(월)~2020.06.26.(금) [5일간] (10:00~17:00) 장소 : 당사 건본주택 T:1833-33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 (송도동 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홈페이지(www.더샵송도센터리얼.kr)에서 선착순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약가능 일정은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 ※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 용
대상자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5.21.(목)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청약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재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은 해당 특별공급에 미적용됨.(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이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50%)) 순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75A	84A	84B	84C	84D	98A	98B	합 계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2	1	1	-	1	6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50%)	-	1	1	-	-	-	2
합 계	1	3	2	1	-	1	-	8